

의안번호	2213826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.
추계번호	25A5791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기술보증기금)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0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,500억원(연평균 500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사업화 금융지원(안 제27조의3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7조의3(사업화 금융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- 2.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- 3.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- 5.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7조의3(사업화 금융지원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개정안에 근거한 관련 예산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(기술보증기금)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“유동화 및 유동화보증”, “기술혁신사업화보증” 등을 수행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출연을 통해 “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”을 수행하고 있는데, 동 사업은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2026년 예산안에 “R&D사업화 계정 출연”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임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유동화 등 사업화 금융지원에 따른 재정소요”로,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추계함
 -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신규 사업인 “R&D사업화 계정 출연”은 IP유동화, R&D기술 유동화, 프로젝트 방식 R&D 사업화보증,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등에 500억원 규모로 편성됨

[표 2] R&D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 개요(2026년도 예산안)

구분	예산안	세부내역
IP유동화	69.2억원	대손충당금 35.2억원 + 기본재산 30억원 + 운영시스템 구축 4억원
R&D기술 유동화	108.8억원	대손충당금 58.8억원 + 기본재산 50억원
프로젝트 방식 R&D 사업화보증	306.1억원	보증공급 2,600억원 ÷ 8.5배수(운용배수) ※ 운영배수: 자금산정방식이 유사한 R&D 개발보증의 최근 5년간 부실률(17%, 운용배수 환산시 약 6배)와 면밀한 리스크 관리·민간은행 출연금 유치 가능성 등 감안하여 산출
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	15.9억원	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515백만원 + 기술중개 지원 150백만원 +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·운영 925백만원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□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사업(“R&D사업화 계정 출연”)의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500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,500억원으로 추계됨

- 2027년 이후 재정소요는 동 사업이 재량지출성 사업임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또한, 2025년에 종료되는 기존 사업(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, 2025년 예산 31억 4,600만원)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차감하지 않음
- 실제 재정소요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이 예산안과 다르게 의결될 경우 추계액과 달라질 수 있음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							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사업화 금융지원(안 제 27조의3)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